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

1. 관련근거

- 가. 예비군법 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- 나. 병역법 제74조의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)
- 다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)
- 라.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-1836(2025.7.8.)
- 2. 위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, 대학 내 구성원들께 아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국방부 안내 내용

- 가.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**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**(학교의 장 → 학교의 장 및 교직원)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(500만원 이하) 부과 조항이 신설('25. 3. 18. 개정 / '25. 9. 19. 시행)되어 관련사항을 관련인 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. [붙임#1]
- 나.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(예비군)에 대한 불리한 처우('23년 / SBS·조선일보 등다수 매체)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사례는 감소했으나, ①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(퀴즈) 실시, ②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(예비군) 출석 결석처리 등이 국방부민원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.
- 다.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, 붙임의 포스터를 활용하여 관련규정 및 신고체계를 적극 홍보 바랍니다. [붙임#2]
- 붙임 1. 「예비군법」개정안(개정 '25. 3. 18. / 시행 '25. 3. 18.) 안내 1부.
 - 2.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포스터 1부.
 - 3. 국방부 협조 요청 공문 1부. 끝.

교 육 부 장



고등교육기관전체

한정사무관 **김수연** 인재양성지원 전결 2025.7.11. 과장 **구본억**

협조자 행정사무관 **배진수**

시행 인재양성지원과-4673 ((2025.7.11.)) 접수 ()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/ https://www.moe.go.kr 전화 044-203-6931 전송 044-203-6485 / s0028@korea.kr / 비공개